의안번호	제 342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6월 30일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변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2

발의연월일 : 2023년 6월 30일
발 의 자 : 변종오,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유재목

1. 제안이유

충청북도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재난안전산업 시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　　의 :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 육성시책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기술 개발

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재난안전산업 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안전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나.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 및 교육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산업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5.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재난안전 관련 위탁사업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의 이해
2.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
3. 재난안전 관련 서비스 개발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이 항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실시 계획을 수립할 것
2.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3.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4.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을 수립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5인 이상의 재난안전사업자가 입주할 것
2. 대상시설에 입주한 재난안전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대상시설의 총연면적 중 재난안전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과 그 지원시설(제4호의 공동이용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 재난안전산업 수행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물을 설치할 것
5. 기존 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기관과의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것
6. 조직 구성, 재원 조달, 장비 활용, 시설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진흥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재난안전 관련 산업 육성 및 이를 지원하는 사업 전반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 조례안 제14조(수당 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75,200천원

-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1식) : 22,000천원
-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1식) : 50,000천원
- 충청북도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 참석수당 : 3,200천원
  · 100천원 × 8명 × 4회 = 3,2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	**22,800**	**50,800**	**800**	**800**	**75,200**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	22,000	-	-	-	22,000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	-	50,000	-	-	50,000
충청북도재난안전산업 육성위원회 참석수당		-	800	800	800	800	3,200
재원 조달		-	**22,800**	**50,800**	**800**	**800**	**75,200**
자체 수입	소 계	-	22,800	50,800	800	800	75,200
	지방세	-	22,800	50,800	800	800	75,200
	세외수입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